

시립목동청소년센터 일요일 근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수당  
적용에 관한 청원

# 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장태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!

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, 교육위원회 위원 채수지입니다.

「시립목동청소년센터 일요일 근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수당  
적용에 관한 청원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현재 시립목동청소년센터를 비롯한 시 산하 청소년시설에서는 일요일  
및 공휴일에도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개방을 위해 직원들이  
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.

○ 그러나 해당 근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 
않고,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6의 일숙직비 지급기준에  
따라 일괄 5만 원만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.

- 청소년센터의 일요일 근무는 단순한 숙직이 아니라, 프로그램 운영, 시설 관리, 민원 응대 등 통상적인 근로를 수행하는 정상적인 근무입니다.
-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시간과 업무 강도에 비해 현행 보상 수준은 매우 낮아,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와 과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- 이에 본 청원은 첫째, 시립목동청소년센터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할 것과 둘째, 서울시 산하 청소년시설 전반의 근무·보상체계를 점검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.
- 청소년시설은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돌봄을 책임지는 공공서비스 기관입니다.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어야, 보다 질 높은 청소년 정책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.
- 본 청원을 계기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,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와

형평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.

- 이상과 같은 제안 취지를 감안하시어, 본 청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